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2.12.27.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별지1호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6. ~ 5. 16.)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영 제11조의6 및 제11조의9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사항

신청구역	구 역 명	면 적	m ²
	위 치		
투자계획	목 적		
	투자이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상시근로자수)		
	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변경사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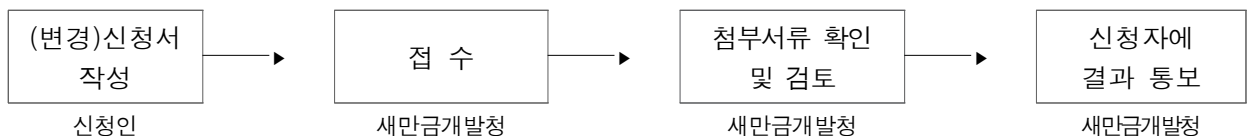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변경)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영		
		제11조의6 및 제11조의9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		
		경)신청서에 지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새만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제3조의2(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상황 신고서) -----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		-----		
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u>별지</u>		----- <u>별지</u>		
<u>제1호서식</u> 에 따른다.		<u>제1의2호서식</u> ----.		